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18. 09. 2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도장애인체육회” 라 한다) 규약 제25조에 따라 도장애인체육회의 지부인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그 명칭은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ChangWon 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CWSAD)로 한다. 사무소는 창원시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 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창원시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수립
2.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및 해외 도시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6. 경상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보급

8.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 수업 보급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2.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자문
13. 장애인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 사업 및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시 종목별 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창원시지부로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장애인체육회는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약 제·개정 시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이의 변경이 있을 때 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 및 탈퇴) ① 가맹단체의 가맹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②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①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3. 이 사 : 35명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4. 감 사 : 2명

② 이사정수에 5명 이상은 종목별 체육단체장을 대표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장애인선수 출신이 20% 이상, 여성임원을 3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부회장·이사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창원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 궐위 시 시장권한 대행이 회장으로 한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창원시 행정국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② 부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시체육회 총무국장, 창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취임은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고문 및 자문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10조 제4항 정하는 당연직 및 직함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때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부회장
2. 부회장 중 연장자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 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
 10. 해당 종목 관련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 4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1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장애인 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예산편성 및 결산의 승인
5.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 종 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휘감독
10. 사무국장의 임면 동의
11.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 3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 5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인사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체전위원회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가맹단체

제21조 (가맹자격) 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부만이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다.

② 구(창원,마산,진해) 3개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단체는 종목별 창원시가맹단체로 통합 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창원시 지부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조직 및 운영) ① 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적용)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회 비
4.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또는 창원시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
5. 사업수입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입금

제25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 연도 종료 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7조 (재산관리)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2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한다

④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직제 및 규정) ①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3조(경영공시)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규정 해석)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도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표창 및 징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6조(규약개정) ①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규약의 변경은 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약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